

2017

한국철학회 정기총회

- 일 시 3월 17일 금요일 17:30 ~ 18:00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사 단 법 인 한국 철 학 회

06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1010호

070-7762-7741 / 010-4763-7609 / kpa1004@gmail.com

■ 정기총회 식순 ■

사회: 이정환 사무총장

- 총회성원 확인
- 개회 선언 및 개회사
- 2016~2017 한국철학회 사업 보고
- 2016년도 한국철학회 결산 및 감사 보고
- 기부금 사용 승인
- 차차기 회장 선출
- 차차기 회장 당선 인사
- 신임 회장 취임 인사
- 회장 이임사
- 전임 회장 감사패 증정
- 공지사항
- 폐회 선언

■ 2016~2017 한국철학회 사업 보고 ■

[일반 현황]

1. 회원 현황(2017년 3월 13일 기준)

개인회원: 571명(중신회원 209명(7명 신규가입), 일반회원 356명(4명 신규가입), 명예회원 6명)
 기관회원: 50개

2. 유효 회원(2017년 3월 13일 기준)

2016년 이후 연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개인 회원	72명
(상기 72명 중 2016,17년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 회원	35명 - 정회원)
중신회원	183명 - 정회원

[2016~2017 임원진 명단]

회장	이진우(포항공대)
직전회장	백종현(서울대)
차기회장	김교빈(호서대)
부회장	김정현(원광대) 정병석(영남대) 한자경(이화여대)
편집위원장	이중원(서울시립대)
연구위원장	박정하(성균관대)
대외협력위원장	이상훈(대진대)
발전위원장	김세정(충남대)
재무위원장	김석수(경북대)
여성철학위원장	김선희(이화여대)
생명윤리위원장	박상혁(동아대)
철학올림피아드위원장	이지애(이화여대)
통일한국철학위원장	김성민(건국대)
열암철학상운영위원장	손동현(성균관대)
감사	서유석(호원대) 이상현(세종대)
사무총장	이정환(서울대)
사무국장	전세라(고려대)

■ 주요 사업 활동 ■

2016. 8. 31 낮 12시 집행위원회 (참석인원 11명, 위임장 4명)

- 2016-17 학회 구성, 운영 방식, 세입 세출안 심의
- 회원 증대 및 학회 발전 방향 논의
-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 논의
- 30대 비전임 회원의 종신회비 관련 논의

2016. 11. 20 낮 12시 이사회 개최 (참석인원 4명)

- [교육청] 2017 예산서 제출 관련 논의
- 춘계학술대회 진행상황 논의 /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검토(가제)

2017. 1. 16 낮 12시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1차 모임 (참석인원: 5명)

-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및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선정
- 이대인문과학원과 학술대회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2016. 12. 16 낮 12시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1차 회의 (참석인원: 6명)

- [열암철학상] 심사 기준 및 시상 계획 논의
- [열암철학상] 시상식 일정 확정
- [열암철학상 소위원회] 구성,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2016. 12. 29 낮 12시 열암철학상 소위원회(1차) (참석인원: 5명)

- 기 수상자 리스트 확인 후, 동양철학 분야로 심사 대상 한정
- 지난 3년간의 철학 관련 저작 리스트를 검토, 후보작 4편 선정
- 공정한 심사 위해 외부 심사위원에게 평가 의뢰

2017. 2. 16 낮 12시 열암철학상 소위원회(2차) (참석인원: 4명)

- 외부 심사위원 평가서 취합
- 후보작 4편에 대한 평가 논의 후 최종 후보작 2편 선정

2017. 2. 25 오후 2시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확대회의 (참석인원: 5명)

- 열암철학상 수상작 선정
- 시상식 준비 상황 점검

2017. 2. 25 낮 12시 이사회 개최 (참석인원: 4명)

-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준비 상황 점검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결과보고서 관련 논의
-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후보자 추천 관련 논의
- [교육청] 기부금 사용 승인

■ 위원회별 사업 보고 ■

1) 사무국 사업 보고

- 집행위원회 개최, 각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위원 위촉, 세입 세출 심의(2016/8/31)
- 임원 변경 승인(교육청) 및 법원 등기 완료
- 월 2회 학회 소식 모아 홈페이지 업로드 및 전체 메일 발송
- 만기 적금 재예치
- 대표자 변경에 따른 고유번호증 재발급(서초세무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신청(2016/9/30) -> 지원 선정(2016/12/29: 5,760,000원 지원)
- 2017 예산서 제출(교육청)
- 2016 결산 보고 준비(국세청, 교육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 법인 통장 등록(국세청에서 법인 관리, 감독 강화 시사)
- [한국연구재단] 2016 학술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2/20)
- [열암철학상]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회의와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제28회 열암철학상 시상(2017/3./16)
- 연구재단, 학술원 등 회원 추천 업무 진행

2) 편집위원회 사업 보고

- 5/31 <철학> 127집 발행, 8/31 <철학> 128집 발행
11/30 <철학> 129집 발행, 2/28 <철학> 130집 발행
- [한국연구재단] 신규 학술지 지원 사업 신청(2016/9/30) ▶ 지원 학술지 선정
-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지원 신청 ▶ 지원 학회 선정 ▶ JAMS 관리자 교육 ▶ 논문 투고 홈페이지 준비 중(8월 31일자 발행분(132집)부터 JAMS를 통한 논문 투고)

3) 철학올림피아드 위원회 보고

- 2016년 8월 집행위원장 변경에 따라 새롭게 철학올림피아드 위원들을 구성
(자세한 철학올림피아드대회 운영위원명단 및 진행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kpo.or.kr> 참조)
- 2017년 1월7일(토) 이화여대 ECC에서 이화여대 철학연구소와 함께 제27회 철학올림피아드(KPO) 대회와 제25회 국제철학올림피아드(IPO) 국내예선대회 개최. KPO중등부 22명, KPO 고등부 37명, IPO(고등부)34명이 참가, 위원들의 3인 독립 심사 과정을 거쳐 1월30일에 각

부의 수상자들을 최종확정, 홈페이지에 공지(IPO예선은 2월4일 구술면접 후 한국대표 2인을 최종 선발함), 한국철학회 회장 명의로 상장 제작, 수상자들의 소속 학교로 발송(별도의 시상식은 없었음)

- 2016년 IPO 본 대회 참가자의 부모가 한국철학회에 기부한 500만원을 올해는 사용하지 않음. 2017년 5월 IPO 본 대회 (5/25-28 네덜란드 로테르담) 참가비용은 (대표학생 2인과 인솔교수의 항공료 및 여행경비) 철학올림피아드 위원회에서 부담 예정(올해에도 본 대회에서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지난 2월 중순부터 선발된 두 학생들의 철학적 글쓰기를 훈련 중에 있음)

4) 열암철학상운영위원회 보고

■ 2016/3/18 [열암철학상운영위원회] 발족회의

- [열암철학상]의 운영을 위해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를 한국철학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 원활한 운영을 위해 4인의 임원(회장,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에 5인 이상 11인 이하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철학 분야의 저서나 논문을 대상으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 수상자를 최종 선정
- 수상자 선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 시상 시기 및 시상 내용

		비고
시상 시기	3월(격년)	3월 셋째주 금요일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시상 인원	1명	
시상 내용	상패, 상금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명단

위원장		손동현	2016. 3~2018. 3
위원	당연직	이진우	2016/8/1기준으로 당연직 위원 변경
위원	당연직	김교빈	
위원	당연직	이중원	
위원	당연직	이정환	
위원		조은수	2016. 3~2018. 3
위원		허남진	2016. 3~2018. 3
위원		박윤창	2016. 3~2018. 3
위원		조대호	2016. 8~2018. 3

- 2014년 10월 16일, 열암철학상 기금 3억원을 한국철학회 기본자산으로 편입하여 현재 목적사업비로 관리 중.
- 학술상 기금(3억)에 따르는 과실소득을 적립해 철학상 관련 예산을 마련 2017/3월 현재 시중금리(1.53%) 기준, 매해 450만원 정도의 과실 소득 발생
- 격년 시상시 900만원 적립 가능, 적립금 중 500만원은 학술상 상금 및 시상식 준비 비용으로 쓰고, 200만원은 학술상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쓰며, 남은 액수는 이월하여 사용
- 학술상 시상을 위해 외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1차 회의 : 2016/12/16

- 이번 28회 시상부터 [열암기념사업회]에서 [한국철학회]로 열암학술상 주관 기관 변경, 명칭도 열암학술상에서 **열암철학상**으로 변경
- 열암철학상은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가 주가 되고 [한국철학회] 회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
- [열암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해 왔던 학술발표회 및 회보 발행은 폐지. 한국철학회 홈페이지에 뉴스레터 형식으로 열암철학상 관련 소식, 발표문을 올리고, 시상식 당일 수상자의 소감 및 학술발표회(20분 정도)를 여는 것으로 대체함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저녁**으로 <열암철학상> 시상식 일정 확정
- 열암철학상 운영위원, 한국철학회 임원, 수상자 손님 포함 30명 내외로 시상식 준비
-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열암철학상 소위원회**] 구성. 지난 3년간 철학저서를 대상으로 공동 심의
- 소위원회 구성: 손동현, 허남진, 이종원, 조은수, 조대호(이상 5인)

■ 열암철학상 소위원회(1차) : 2016/12/29

- 12/21, 사무국장은 지난 3년간 철학 관련 저작 200여편의 리스트를 만들어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
- 소위원회에서 후보작 4편으로 압축,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를 통과한 4편의 저작에 대해 외부 심사를 의뢰하기로 결정

■ 열암철학상 소위원회(2차) : 2017/2/16

- 외부 심사위원의 평가서 취합 (2/13)
- 후보작 4편에 대한 평가 논의 후 최종 후보작 2편 선정

■ 열암철학상 운영위원회 확대회의 : 2017/2/25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관련 논의.

제28회 열암철학상 시상식 : 3월 16일(목) 저녁 6시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수상자 : 조경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수상작 : 『국가, 유학, 지식인』 책세상, 2016.

■ 2016년도 한국철학회 결산 및 감사 보고 ■

재 무 상 태 표

제 6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5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철학회

(단위 : 원)

과 목	제6(당)기		제5(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742,458,403		728,346,874
(1) 당 좌 자 산		742,458,403		728,346,874
보 통 예 금		55,518,365		41,601,076
기 타 제 예 금		15,721,198		15,721,198
정 기 예 . 적 금		670,000,000		670,000,000
선 납 세 금		1,218,840		1,024,600
(2) 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100,000,000		100,000,000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100,000,000		100,000,000
건 물		100,000,000		100,000,000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0
자 산 총 계		842,458,403		828,346,874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50,690		49,500
예 수 금		150,690		49,500
Ⅱ.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150,690		49,500
자 본				
Ⅰ. 자 본		770,000,000		770,000,000
기 본 재 산		770,000,000		770,0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72,307,713		58,297,374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82,692,233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72,307,713		-24,394,859
(당 기 순 이 익)				
당기 : 14,010,339 원				
전기 : -7,224,499 원				
자 본 총 계		842,307,713		828,297,37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42,458,403		828,346,874

한국철학회 감사보고서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단위: 원

항목			지출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전기이월①	58,297,374	이월금	경상비		
회비	9,242,900	개인+기관 연회비	사무비	2,046,310	사무실 관리 및 운영비
				1,142,116	통신비
				398,940	사무-용품비
				320,400	기타잡비(화환, 근조기, 이체수료, 감사패 등)
			세금	7,521,188	재산세, 법인세, 법인등기, 세무사 기장, 세무조정비
					11,428,954
기타수입	학술수입	9,909,500	계재료 + 심사료		
	과실소득	11,547,607	이자소득		
	저작권 수입	3,824,000	<철학> 저작권 수입		
	(주)머니투데이	10,000,000	2016. 4. 27		
기부금	(주)사회평론	3,000,000	2016. 5. 16		
	김광호	5,000,000	2016. 6. 3		
	이진우	10,000,000	2016. 6. 22		
	한국연구재단	5,760,000	2016. 12. 29		
소계②		68,284,007	소계⑦		770,000,000
총계①+②		126,581,381	총계⑤+⑦		842,307,667

상기의 내용이 관련 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에 기재되지 않음을 감사함

감사: 서 유 석



감사: 이 상 현



■ 기부금 사용 승인 ■

■ 사용 승인 대상 기부금 내역

김광호	철학올림피아드 지원	5,000,000	2016. 6. 3
이진우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지원	10,000,000	2016. 6. 2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발간	5,760,000	2016. 12. 29

■ 관련 조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호(재산의 구분)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하며(공익법 제16조①-2호),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합리성·타당성·객관성을 띤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기부금 사용 승인』을 금하며, 특히 운영비를 위한 승인은 엄금한다.

■ 2018~2019 한국철학회 회장 선거 ■

■ 후보자 이력 및 추천의 변 ■

1. 임홍빈(고려대)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 백 중 현

선거관리위원: 이중원, 박정하, 이정환, 이상현

1. 한국철학회 회장 후보자 이력서

성명: 임 홍 빈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교수 (1992-)

국제헤겔학회(베를린) 학술자문위원 (2009년 -)

국제그리스철학회 (아테네) 명예회장 (2014년 -)

(전) <철학>(한국철학회 간행) 편집위원장(2004.6-2007.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소장(2002-2008)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장(2009-2012)

MBC 시청자위원(2002-03)

교육부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회 위원(2009.9-2010.8)

학력: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1978),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학부에 편입하여 철학을 전공으로 사회학,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1986년 Magister Artium을 취득했음.(학위논문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4번째 Paralogismus의 해석에 관한 것임). 계속 같은 대학에서 헤겔의 이론철학(논문제목: “헤겔철학에서 절대적 차이와 개념”)을 중심으로 1989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음.

강의 및 연구경력: 영남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2년간 봉직했으며, 독일 브레멘대학에서 1학기 초빙교수로 강의한 바 있음. 또한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대학과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Canberra 소재)에서 연구교수로 체류했음.

저서: Der Absolute Unterschied und Begriff in der Philosophie Hegels, Frankfurt 1989.

기술문명과 철학, 서울 1995.

근대적 이성과 헤겔철학, 서울 1996

세계화의 철학적 담론, 서울 2002,

인권의 이념과 아시아가치론, 아연출판부, 2003.

수치심과 죄책감, 서울 2013,

편저: Hans Jörg Sandkühler, Hong-Bin Lim(eds.), Transculturality-Epistemology, Ethics, and Politics, Frankfurt am Main 2004,

Hong-Bin Lim, Georg Mohr (eds.), Menschsein: On Being Human, Frankfurt a.M. 2011.

역서: 윤리학사전(저자: 오토프리트 회페, 역자, 임홍빈, 김종국, 소병철)

정신분석강의(저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역자; 임홍빈, 홍혜경) 서울 1997

새로운 정신분석강의(저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역자; 임홍빈, 홍혜경) 서울 1996.

논문: ‘헤겔연구’, ‘니체연구’, ‘철학연구(대한철학회 간행)’, ‘범한철학(범한철학회 간행)’, 철학논총(새한철학회간행), ‘철학(한국철학회 간행)’, ‘철학연구(철학연구회 간행)’ ‘철학연구(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간행),’ ‘Dialektik(독일 Felix Meiner 간행), 등의 학술지에 수십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제그리스철학회, 영국및 아일랜드 니체학회, 국제헤겔학회 등의 Proceedings, 그리고 신귀현교수, Sandkühler 교수, A. Arndt 교수 등의 Festschrift(Book chapters) 등에 논문을 발표했음.

2. 한국철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의 변

본인은 피추천인이 제시한 공약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기에,
피추천인을 차기 한국철학회 회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2017. 2. 20

피추천인: 임홍빈 (고려대학교 교수)

추천인:

강순전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해결학회 회장)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

김양현 (전남대학교 교수)

노양진 (전남대학교 교수)

문성학 (경북대학교 교수, 대한철학회 회장)

박병철 (부산외대 교수)

성진기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철학회장 역임)

최신한 (한남대학교 교수, 철학연구회 회장)

김우영 (전주 교육대학교 교수, 범한철학회 회장)

3. 한국철학회 회장 후보자 출마의 변

1.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회장 선거제도의 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2. 관련 위원회와 학회회원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강의하는 이론이나 쟁점들을 중심으로 학회주제를 선정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3. 학계의 여론을 충실하게 수렴하여 ‘전국 철학자 대회(가칭)’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 3 가지 사항들은 궁극적으로 학회 회원 여러분의 참여도를 대폭 높이고,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비록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가 열성을 다해 노력하고 회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경우,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임 홍 빈 드림.

2017. 2. 20.

■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

■ 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세칙 ■

제1조 (자격) 후보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장 후보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2조 (방식)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제3조 (선거권) 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은 총회개최일 30일 전까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선출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선거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체 없이 회장 선출에 관한 공지를 하여 총회 개최 15일 이전까지 후보 등록을 받도록 하며, 총회 소집이 공고될 때 후보 등록 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② 총회에서 신임회장의 당선 확정과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종료된다.

제6조 (후보 등록) 회장 후보는 자원자의 의사 표명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그 자격을 얻는다. 단, 자원자 또는 추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총회 개최 15일 이전) 회장 후보에 관한 자원 혹은 추천의 의사를 서면(또는 e-mail)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제출서류: 후보자의 이력서, 공약 등 자원 또는 추천의 변)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정관의 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
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인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철학의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철학회(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KPA로 약칭)”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함)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 연구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2. 학회지의 발간 및 그 밖의 철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간
 3. 분과별 연구 활동
 4.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5. 학술상 시상
 6. 그 밖에 철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활동
-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업
-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의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철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② 본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정관의 시행세칙에 의거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법인의 정관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위원회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감사 2인. 단, 이사 중 회장 1인을 두고 차기회장, 직전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정관의 시행세칙에 의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1년,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이사장이 된다.
 - ③ 본회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차기회장을 1년 전에 선출한다.
 -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3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4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의 유고 혹은 궐위 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독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학술위원회, 집행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발전위원회, 여성철학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재무위원회, 한국철학회 기금위원회, 분과연구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본회 산하에 한국철학자연합대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그밖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5, 6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리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거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수증,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 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일간 서울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 여 수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1년
이사	이 영 호	서울시 도봉구 창2동	1년
이사	정 영 도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년
이사	김 팔 곤	전북 익산시 신동	1년
이사	김 영 정	서울시 양천구 목동	1년
이사	이 길 우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1년
이사	김 형 철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1년
이사	백 종 현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1년
이사	손 동 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2년
이사	이 삼 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년
이사	엄 정 식	서울시 양천구 목동	2년
이사	김 규 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년
이사	박 영 식	서울시 양천구 목6동	3년
이사	신 일 철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3가	3년
이사	이 헌 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년
감사	장 옥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1년
감사	유 기 상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2년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정관은 감독청인 교육청의 허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

【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1. 기본재산 총괄표

(1995년 11월 4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금 (정기성예금)	1계좌	50,000,000원	외환은행 154-16-02706-1
합계	1계좌	5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1995년 11월 4일 설립허가일 현재 기준)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단가(원)	평가액(원)	비고
현금	정기성예금	1계좌		50,000,000원	외환은행 154-16-02706-1
합계		1계좌		50,000,000원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1. 기본재산 총괄표

(2017년 3월 현재기준)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정기예금	6계좌	670,000,000원	
부동산	1	10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17년 3월 현재 기준)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정기예금	우리은행				70,000,000원	1020-416-522957
	국민은행				200,000,000원	453815-13-46134-01
	우리은행				100,000,000원	1020-718-640578
	우리은행				100,000,000원	1020-818-634269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303-1545-4303-61
	국민은행				100,000,000원	411415-13-17378-01
부동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기림오피스 텔 10층 1010호	업무 시설	건물 28.3 토지 5.97	100,000,000원	
합계					770,000,000원	

■ 2016~2017 한국철학회 임원 및 전체 위원회 ■

법인이사

이진우(이사장, POSTECH), 백종현(직전회장, 서울대)
김교빈(차기회장, 호서대), 이중원(편집위원장, 서울시립대)
이정환(사무총장, 서울대)

법인감사

서유석(호원대), 이상현(세종대)

임 원

회 장: 이진우(POSTECH)
부 회 장: 김정현(원광대) 정병석(영남대) 한자경(이화여대)
사무총장: 이정환(서울대)

집행위원회

위 원 장: 이진우 회장

백종현 직전회장, 김교빈 차기회장, 김정현 부회장, 정병석 부회장, 한자경 부회장,
박정하 연구위원장, 이중원 편집위원장, 김세정 발전위원장, 이상훈 대외협력위원장,
김선희 여성철학위원장, 박상혁 생명윤리위원장, 김성민 통일한국철학위원장,
김석수 재무위원장, 이지애 철학올림피아드위원장, 손동현 열암철학상운영위원장,
이정환 사무총장 (이외 회장이 임명한 자)

학술위원회(법인이사외 학술이사로 구성, 학술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1/3은 지역학회장의 추천으로 구성)

위 원 장: 이진우 회장

연구위원회(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발전위원장)

위 원 장: 박정하(성균관대)

강성훈(서울대), 강지연(창원대), 김세정(충남대) 김시천(숭실대), 김정현(원광대),
남기호(제주대), 박구용(전남대), 박기순(충북대), 박정심(부산대), 신상규(이화여대),
원치욱(광주과학기술원), 이상욱(한양대), 이진남(강원대), 이진우(POSTECH), 이현재
(서울시립대), 장은주(영산대)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이중원(서울시립대)

김방룡(충남대) 김상득(전북대) 김준수(부산대) 김재철(경북대) 손병석(고려대)
신지영(경상대) 유성선(강원대) 이병덕(성균관대) 이석재(서울대) 이철승(조선대)
정세근(충북대) 최소인(영남대) Paul Cortois(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Chang-Seong Hong (Minnesota State University-Moorhead), Halla Kim
(University of Nebraska-Omaha), Noburu Notomi(Keio University), Jin Y.
Park (American University), Jörg Plassen(Ruhr-Universität Bochum),
Sun-Joo Shin(Yale University), Byeong-uk Yi(University of Toronto)

대외협력위원회(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위 원 장: 이상훈(대진대)

김한결(Temple University), 도승연(광운대), 서대원(충북대), 송지우(서울대),
이진우(POSTECH), 한자경(이화여대)

발전위원회(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대외협력위원장, 연구위원장)

위 원 장: 김세정(충남대)

고재석(성균관대), 김경호(전남대), 김남준(충북대), 김완구(서강대), 김정현(원광대),
노희정(광주교대), 박정심(부산대), 박정하(성균관대), 양선진(고려대), 유성선(강원대),
이상훈(대진대), 이진우(POSTECH), 장승희(제주대), 진성수(전북대), 최재목(영남대),
한대석(충남대), 현남숙(이화여대), 황종원(단국대)

여성철학위원회(당연직: 회장, 부회장 1인)

위 원 장: 김선희(이화여대)

김세서리아(이화여대), 김애령(이화여대), 김화경(경기대), 신정원(한국예술종합학교), 양
선숙(경북대), 이진우(POSTECH), 이혜정(한국외대), 한자경(이화여대)

통일한국철학위원회(당연직: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발전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연구위원장)

위 원 장: 김성민(건국대)

김교빈(호서대), 김선희(강원대), 김세정(충남대), 김형찬(고려대), 박영균(건국대), 박정하(성
균관대), 백종현(서울대), 서유석(호원대), 선우현(청주교대), 이상훈(대진대), 이진우
(POSTECH), 이철승(조선대), 홍윤기(동국대)

생명윤리위원회

위 원 장: 박상혁(동아대)

김수정(가톨릭대), 목광수(서울시립대), 최경석(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철학올림피아드

위 원 장: 이지애(이화여대)

박연숙(숭실대), 박정하(성균관대), 안광복(중동고), 이지연(조선대), 이진남(강원대),
전대석(고려대), 한기호(성균관대), 현남숙(가톨릭대)

재무위원회

위 원 장: 김석수(경북대)

열임철학상운영위원회(당연직: 회장, 차기회장, 편집위원장, 사무총장)

위 원 장: 손동현(성균관대)

김교빈(호서대), 박윤창(성균관대), 이정환(서울대), 이중원(서울시립대), 이진우
(POSTECH), 조대호(연세대), 조은수(서울대), 허남진(서울대)

사무국장: 전세라(고려대)